

#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형 악 심\*\* Ak-sim Hyeong

박 성 호\*\*\* Sung-ho Park

### | 목 차 |

I. 서 론	IV. 결론
II.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III.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규정적 차이점	Abstract

### 국문초록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 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715).

\*\*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 졸업, 주저자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제어〉 매도인의 인도의무,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

## I. 서론

국제상거래는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거래로서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무역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르고, 상거래 관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를 들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특수한 경제제도 아래 민·상법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의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에서는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통일규칙 등 국제통일규범의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규범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내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NCOTERMS, 이하 Incoterms라 한다)과 유엔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하 CISG라 한다)이다. Incoterms는 계약적 거래관습의 위치를 겸하고 있는 국제적인 통일매매관습이며,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실상의 표준규범(De Facto Standard)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계약은 물품인도와 서류인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언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의 소유권 문제가 결정되어야만 쌍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CISG와 Incoterms에서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

여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상거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은 CISG와 Incoterms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국내법상 관련 규정을 이해함으로써 국제상거래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물품인도와 서류인도, 소유권이전을 중심으로 CISG, Incoterms 2010, 중국 합동법, 그리고 한국 민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CISG와 Incoterms간의 규정 및 규범적 차이점<sup>2)</sup>, 중국 합동법과 CISG 및 한국 민·상법상의 관련 규정의 차이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과는 차별성을 가지면서,<sup>3)</sup> 한·중 무역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 간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그 차이점을 찾아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외의 관련 저서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례와 무역 실무가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 조항도 고려하였다.

## Ⅱ. 매도인의 인도 의무에 관한 규정

### 1. 매도인 인도 의무의 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물품과 서류의 인도이다. CISG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 서류인도 의무, 물품의 계약적합 의무,

- 1) 중국 합동법과 한국 민법은 자국내에서 강행법이고, CISG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계약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강행법규이다. 그러나 Incoterms는 법적인 강행성이 없는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적 거래관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다루는 이유는 매매계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 또는 CISG 및 Incoterms 등 국제규범 및 거래관습을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선택된 준거법이 매매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준거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오원석·허해관(2010)은 CISG와 Incoterms는 그 법률적 근거는 다르지만 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역할, 박남규(2013)는 CISG와 Incoterms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차이점, 김상만(2011)은 CISG와 Incoterms에서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 3) 이시환(2004)은 중국 합동법의 매도인 의무에 대해 CISG와 한국 민·상법의 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sup>4)</sup>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sup>5)</sup>고 규정하고 있다.<sup>6)</sup> Incoterms에서도 모든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sup>7)</sup> 운송서류의 제공 등 그 외 매도인의 의무 내용은 각 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다(김상만 2011, 136). 중국 합동법(合同法; 계약법)에서는 제9장 매매합동(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인 물품인도의 시기, 장소, 수량, 방식, 서류인도,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에서는 추정적 인도, 소유권인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인도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SGA)에서는 “인도라 함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의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또한 유체동산의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에서는 “물품인도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교부하는 것(handing ove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즉 물품인도를 실제 물품의 소유와 이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인도에 관한 정의가 없지만, 제31조를 미루어 보아 CISG 제67조에서 “인도(hand over)”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고 있다(Honnold 2009, 393). 인도란 실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CISG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면, 인도는 ‘물품의 교부’(handing over) 또는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둬’(placing the goods at the

4) CISG Art. 30.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5) CISG Art. 4. This Convention governs only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In particula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it is not concerned with: (a)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b)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6)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주목적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별 상이한 법원칙, 특히 ‘의사주의’(Konsensualprinzip)를 취하는 프랑스법계 및 영미법계와, ‘인도주의’(Traditionsprinzip)를 취하는 독일법계가 대립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원칙을 포기할 용의가 없어 통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권의 준거법에 의한 사항이다(석광현 2009, p. 250).

7)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8) Delivery means 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 from one person to another(SGA 61(1)).

9) Delivery consists in the handing over of goods which conform with the contract(ULIS 19(1)).

buyer's disposal)으로써 이루어진다.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의 점유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점유이전 행위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물품을 특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매수인이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UNCITRAL 2008, 95).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의 점유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매수인이 인도장소에서 그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 이외의 것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sup>10)</sup>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물품의 점유를 취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바(UNCITRAL 2008, 99),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다면, 매수인이 물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Incoterms 2010에서는 인도(Delivery)라는 용어에 대하여 “무역법과 관습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Incoterms 2010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의 이전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중국 합동법은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거래대상을 동산과 부동산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부동산은 그와 관련된 주관부서에서 등기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정표 2002, 380).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때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장소, 수량, 품질 및 포장방식에 일치해야 한다. 현실적 인도를 하는지 추정적 인도를 하는지 상관없이 부합된 규정이 있으면 된다.

한국 민법에서는 물품인도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인도의 개념은 점유가 이전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인도(delivery)란 자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서류의 인도만으로 점유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10) CLOUT Case No. 338 [Germany, Oberlandesgericht Hamm, 23 June 1998].

11) Delivery: This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in trade law and practice, but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t is used to indicate wher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10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Publications, 2010, p.10).

## 2. 물품인도에 관한 규정

### 1) 인도 장소에 관한 규정

#### (1) CISG

CISG 제31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운송의 포함여부와 관계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sup>12)</sup>

##### ① 계약에 물품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모든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된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계약이 운송을 포함한다는 뜻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계약된 물품을 인계할 당사자인 운송인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31조 a호). 여기서 운송인은 영업지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Bianca, Bonell 1987, 31).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다(hand over)는 것은 물품의 사실상의 지배를 운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현실적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운송 중(in transit)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운송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물품 소재지 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당해 계약물품이 특정물이거나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인 경우 또는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인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현재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제31조 b호).

예를 들면, 유명화가가 그린 그림과 같은 특정물이거나, 고철더미에서 추출된 특정량

12) 본 조항은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인도 장소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CISG 제4조).

의 고철이거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시계를 매매할 경우 등을 위한 계약에는 물품의 소재지 또는 생산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둬으로써 인도가 완료된다. 다만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체결 시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의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인도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만약에 물품이 이미 창고업자나 운송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지배하는 서류인 창고증권이나 화물상환증 등의 교부에 의하여 물품은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

### ③ 상술한 2가지 외의 경우

운송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장소에서 물품 인도 의무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어야 한다(제31조 c호). 즉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에 관하여 CISG는 추심채무원칙<sup>13)</sup>을 따르고 있다.

## (2) Incoterms

Incoterms 상의 각 조건 뒤에 표기되는 장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Incoterms 2010의 11가지 조건 중에서 EXW, FCA, FAS, FOB, DAT, DAP, DDP조건은 조건 뒤에 나오는 장소명은 인도장소가 되지만, CFR, CPT, CIF, CIP조건은 뒤에 나오는 장소명은 인도장소가 아니고 비용의 분기장소이다. 따라서 C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을 사용할 경우 인도 장소는 계약서에 별도로 선적장소 또는 인도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중국 합동법

매도인은 약정된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인도할 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즉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3)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을 하는 장소에 따라 추심채무와 지참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추심채무(推尋債務)는 채무자의 주소에서 인도하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행하는 지참채무(持參債務)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추심채무라고 정하는 경우 외에 법률상으로 추심채무라고 정하고 있는 예도 있다(516조, 524조). 추심채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추심하러 오지 않는 이상은 이행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지참채무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인도하는 채무로서 당사자가 추심채무의 약속을 한다든가(家主 飢에서 매월의 집세를 借家人에게 받으러 간다는 약속) 법률이 특히 추심채무라고 정한 경우(중권적 채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계약 시에 그 특정물이 존재하던 장소가 이행지가 된다(467조).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의 구별은 종류채권의 특징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책상을 주문했다고 가정한다. 지참채무라면 채무자 B가 책상을 채권자 A의 주소에 보냈을 때 특정되거나 추심채무라면 채무자 B는 인도의 준비가 됐음을 채권자 A에게 통지했을 때 특정된다.

에는 첫째, 운송을 요하는 목적물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운송을 요하지 않는 목적물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목적물 소재장소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목적물의 소재가 특정되지 않은 때에는,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중국 합동법 제141조).

#### (4) 한국 민법

한국 민법에서는 물품인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의 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해 한국 민법 하에서도 인도 장소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먼저 그에 따른다(오원석 2004, 313).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인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물인 경우 그 소재지, 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현주소지나 현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인도시기에 관한 규정

### (1) CISG

CISG 제33조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시기에 대해 특정 기일, 특정 기간, 기타의 경우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도인은 각 인도시기에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둬으로써 인도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 되고, 그 시기까지 매수인이 실제로 물품에 대한 점유를 현실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ISG 제52조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한 인도기일 이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특정 기일

인도일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안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3조 a호). 따라서 특정기일을 인도기일로 정한 경우 반드시 그 인도기일에 인도해야 하며, 그 인도기일 이후 뿐만 아니라 인도기일 이전에 인도하는

것도 계약위반이 된다(UNCITRAL 2008, 98). 이 경우 매수인은 그 시기 이전에는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제52조 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면 사전인도도 계약에 적합한 이행이 된다.

## ② 특정 기간

인도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 내의 어떤 시기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3조 b호). 따라서 인도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체결일부터 인도기간 사이에 물품을 인도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후에 물품을 인도하면 계약위반이 된다. 한편, 인도시기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인도기일의 지정권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에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에게 특정인도기일의 지정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sup>14)</sup>

## ③ 상술한 2가지 외의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reasonable period)”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3조 c호). CISG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의 개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나 소송이 제기된 특정기관이나 법정지에서 해당 상황에 적합한 기간을 판단한다.<sup>15)</sup>

## (2) Incoterms

Incoterms는 각 조건의 A.4에서 인도시기에 관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시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일자나 기간 내에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도시기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인도일자(delivery date)보다는 선적일자(shipping date)를 표시하는

14) ICC Court of Arbitration, France, March 1998, Award No. 9117,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0, 8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Press, 2008, 99.

15) 예를 들면 매수인이 인도기한을 3월 15일로 청약하였고, 이에 대해 매도인이 청약을 변경하여 인도기간을 4월로 인도기일을 유보하여 승낙한 경우, CISG 제19조 제2항(실질적인 변경없는 추가조건을 첨부한 승낙의 인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되어 인도기간은 4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간의 결정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최종 추가적인 연락을 취했던 4월 11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CLOUT Case No. 362 [Germany, Oberlandesgericht Naumburg, 27 April 1999]).

경우가 많다. 즉, 이 경우 FOB나 CIF 조건의 경우 인도일자와 선적일자가 일치하지만 도착지 인도조건인 D그룹의 경우에는 인도일자와 선적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일자와 선적일자를 표시하여 혼란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① 모든 운송방식을 위한 규칙

EXW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작업장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는 시점이 인도시점이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지 또는 기타 장소인지로 구분하여 인도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운송수단 위에 적재하면 인도가 완료되고, 기타 모든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이 양하 준비가 완료된 매도인의 운송수단 위에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둘 때 인도가 이루어진다. CPT와 CIP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A.3(운송계약)에 따라 계약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완료된다. DAT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둘 때 인도가 완료되고, DAP와 DDP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도착하는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가 완료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둘 때 인도가 완료된다.

②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

FAS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놓아둘 때 인도가 완료되고, FOB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적재한 때 인도가 완료된다. CFR과 CIF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한 본선에 적재한 때 인도가 완료된다. 또한 이상의 4가지 조건들에서 인도된 물품이 해상운송 도중에 연속매매(string sale)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으면 계약체결 시점에 물품의 인도가 일어난다.

(3) 중국 합동법

매매계약에 인도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인도기간 내에 언제든지 인도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국 합동법 제138조). 매도인이 인도기간 전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인도기간 전에 인도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보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의 관련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하고(중국 합동법 제61조), 그래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고 채권자도 언제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중국 합동법 제6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중국 합동법 제139조).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계약발효시점이 바로 인도시점이다(중국 합동법 제140조).

#### (4) 한국 민법

한국 민법 제387조에서는 “① 채무 이행의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85조에 의하면,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이행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이 동시에 인도 의무의 이행 기한이 된다.

### 3) 물품의 계약 적합성에 관한 규정

#### (1) CISG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품질·수량·특성·포장 등에 있어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권리 이행에 지장이 없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CISG 제35조는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매도인 의무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조 제1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 수량 및 특성에 적합하고 또 계약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CISG에서는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를 구별하지 않고 수량부족도 물품 하자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물품매매에서는 장거리 수송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량에 대한 과부족을 허용해 주고 있다.

품질 적합성은 계약적합의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많은 경우 계약이 요구하는 품질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은 계약적합의무를 알기 위하여 계약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제35조 제2항 a호는 “물품은 그와 동일한 특성의 물품이 사용되는 통상적인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목적에의 적합성 판단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국 내지 지역에서의 통상의 사용목적을 그 기준으로 하지만,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사용 또는 전매하려는 국가나 지역을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나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이 물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기 원하는 경우 그 지역이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오원석 2002, 7).

또한 제35조 제2항 b호에서는 계약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특정 목적을 알려준 경우 매도인은 그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어떤 물품에 대한 특정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용목적을 위해 어떤 물품이 될 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 그러한 특정 사용목적을 매도인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 체결 시에 알렸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물품의 특수한 목적이 매도인에게 알려졌다 해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에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신뢰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임을 매도인이 입증한다면, 매도인은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해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오세창, 박성호 2014, 332).

제35조 제2항 c호에서는 물품은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을 토대로 당사자 간에 교섭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도된 물품은 그것과 동등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인도된 물품이 일정 부분 견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의 품질이 그 기준이 된다.

제35조 제2항 d호에서는 매도인은 계약에 정해진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방법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은 포장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Incoterms

Incoterms에서는 물품 품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매도인 의무 A.1에서 계약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서 물품의 적합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중국 합동법

중국 합동법 제153조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견본을 제공하거나 물품과 관련된 품질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4조에서는 당사자들이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에 따라 당사자는 합의해서 보충할 수 있고, 보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관련된 조항 혹은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제62조 제1항에 의해 국가표준·업종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국가표준·업종표준이 없는 경우 동종물품의 통상의 표준 혹은 계약목적 실현하기 위한 특정표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자주적이거나 또는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목적에 합치되는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행하면 될 것이고, 계약의 목적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며 매도인이 매수인의 특정한 사용목적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매도인은 당연히 약정된 수량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부족하게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수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량을 거절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통지를 미룬다면 목적물의 수량·품질이 약정과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중국 합동법 제158조). 매도인이 목적물을 초과하여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초과부분을 수령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부분을 수령한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초과부분을 거절하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중국 합동법 제162조). 그리고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수량이 계약의 과부족 용인범위 내인 경우 인도수량은 약정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다(屈茂辉 2003, 181).

국제무역에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적당한 포장을 필요로 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포장방식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포장방식에 대해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합동법 제61조에 의해서도 포장방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통상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포장을 하고 통상 사용되는 방식이 없는 경우 물품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중국 합동법 제156조).

### (4) 한국 민법

한국 민법 제375조에서는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

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에 대해서 매매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물품의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물매매에서도 하자 여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것으로서 보통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 내지 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sup>16)</sup>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 민법 제574조에서는 “57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서류인도에 관한 규정

#### 1) CISG

CISG는 제30조에서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서류를 제공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를 첫째는 물품인도의무, 둘째는 서류제공의무, 셋째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의무로 구분한다.

서류인도 의무에 대해서 CISG 제34조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제34조 전반부는 매도인의 서류인도 의무에 대하여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요구되어 있는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되는 서류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추어 시기나 방법이 계약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장에 의한 대금회수의 길이 막히게 된다(Honnold 1999, 247).

둘째, 제34조 후반부는 불일치 서류의 보완에 관한 독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약정기간 이전에 매도인이 서류를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약정기간까지는 서류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로 말미암아 매수인의 불합리한 불편이나

16)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매수인은 협약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서류를 인도할 때 어떤 서류를 인도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류, 예컨대 선하증권, 부두수령증, 창고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보험증권, 상업송장,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중량증명서, 품질증명서 등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세창, 박성호 2014, 322).

만약 서류의 인도가 계약에서 정한 일시·장소·방법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며, 매수인은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Incoterms

Incoterms에서는 각 조건별로 매도인의 서류인도 의무(A.8)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인도해야 하는 서류를 알 수 있다. 통상 추심결제방식의 계약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서상의 서류를 제공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택한 Incoterms 조건의 A.8 규정에 따라 기타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김상만 2011, 136).

EXW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인도 의무는 없다(EXW A.8). F그룹(FCA, FAS, FOB)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FCA, FAS, FOB A.8). FOB 조건에서 운송서류는 선적선하증권, 비운송서류는 본선수취증(mate receipt)이 될 수 있다. FAS 조건은 선측인도를 증빙하는 서류로 부두수령증을 들 수 있다. FCA, CPT, CIP 조건의 경우 수취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등이 인도의 증빙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가 된다.

당사자 간에 C그룹(CFR, CIF, CPT, CIP) 중 하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교부할 서류로서 통상 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이 있다. 이 서류는 계약물품을 표시하고, 선적을 위해 합의한 기간 내에 일부(日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매수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도착지향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달리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으로 하여금 후속 매수인에게 운송서류의 양

도에 의해 또는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운송서류가 복본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CFR, CIF, CPT, CIP A.8). CFR과 CIF 조건의 통상적 운송서류는 선하증권이고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이어야 하고, CPT나 CIP 조건에서는 수취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 될 수 있다.

D그룹(DAT, DAP, DDP)은 매도인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DAT, DAP, DDP A.8). DAT 조건은 특정지점에 위치한 부두나 터미널에서 인도가 되므로 선하증권, 인도지시서, 창고증권이 인도증빙에 활용된다.

### 3) 중국 합동법

중국 합동법 제136조에서 “매도인은 약정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목적물 수령 증권 이외의 관련서류 및 자료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약정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습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이 매매계약과 관련 있는 목적물 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외의 기타 서류와 자료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의무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중에서 부담하는 종된 계약의무에 속하면서 주된 계약의무를 보조하여 매수인의 거래목적 실현시킨다.

실거래에서 매매계약 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기타 증서와 자료 중 중요한 것으로는 상품검사합격증, 물품보증서, 수리증서, 송장, 검사증, 검역증, 보험증서, 품질보증서, 포장명세서 등이 있다(이시환 2004, 16). 그런데 매도인이 약정에 의해 목적물에 관련된 증빙 서류와 자료를 인도하지 않아도 목적물의 멸실·훼손의 위험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중국 합동법 제147조).

### 4) 한국 민법

한국 민법에서 서류인도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된다. 민법 제568조 제1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이시환 2009, 229).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서류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나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서류인도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88조 제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민법의 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동산 소유권이전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 Ⅲ. 매도인 인도 의무에 관한 규정적 차이점

제2장에서 매도인의 이행 중 물품과 서류인도에 대해서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그리고 한국 민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물품인도 규정의 차이점

##### 1) 인도장소의 차이점

인도장소를 약정한 계약에 있어서는 모든 규범에서 약정된 인도장소에서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규범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인도를 위해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 CISG와 중국 합동법에서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장소를 약정해야 한다.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이 개입되든 개입되지 않든 관계없이 각 조건 별로 인도장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C조건일 경우 명시된 장소가 인도장소가 아니라 비용분담장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도장소를 약정해야 한다. 한국 민법은 인도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운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CISG와 중국 합동법은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특정물의 소재장소나 불특정물의 생산 예정 장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기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인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인도시기의 차이점

인도시기를 약정한 계약에 있어서는 모든 규범에서 약정된 인도시기에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규범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CISG는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ncoterms 2010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중국 합동법은 매수인과 계약 체결 후에 보충합의를 하거나 계약에 대해서도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민법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인도시기로 보고 있다.

## 3) 물품의 계약 적합성에 관한 차이점

계약물품의 품질에 관해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 CISG에는 견본 모형과 동등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Incoterms 2010에는 품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물품은 계약에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합동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보충할 수 있고, 보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관련된 조항 혹은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그래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국가표준·업종표준이 없는 경우 동종물품의 통상의 표준 혹은 계약목적 실현하기 위한 특정표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 민법에서는 인도물품의 중등품질에 의거 물품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량에 대해서 CISG는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량부족은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거절 또는 인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수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합동법은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이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절할 경우 매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한국 민법은 수량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 물품인도 의무에 관한 4가지 규범의 규정적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표 1〉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4가지 규범의 규정적 차이점

	CISG	Incoterms 2010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
인도 장소	합의한 경우: 합의한 장소 합의하지 않은 경우: ①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장소(제31조 a호) ②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물품 소재 또는 생산 장소(제31조 b호) ③ 기타의 경우 -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장소(제31조 b호)	각 조건별 상이: ① E, F, D 조건 - 각 조건 뒤 명시한 장소 ② C 조건 - 별도 합의	CISG와 동일(제141조)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① 특정물 - 채권 성립시 소재지(제467조 1항) ② 특정물 이외의 물품 - 채권자의 현주소지 또는 현 영업지(제467조 2항)
인도 시기	합의한 경우: 특정기일 또는 기한내(제33조 a/b호) 합의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합리적인 기한(제33조 c호) 조기인도의 경우: 매수인이 수령 또는 거절 선택 가능(제52조 1항)	합의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서 각 조건 A.4에 따라 시점 상이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한(제138조) 합의하지 않은 경우: ① 보충합의를 하거나 거래 관습에 따라 확정(제61조) ② 이행기간 불명확시 상대방에게 준비기한을 준다면 언제든지 가능(제62조 4항) 계약체결 전 매수인 점유 - 계약의 효력발생시(제140조)	채무이행의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제387조 1항/제585조) 합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제387조 2항)
계약적합성	품질 합의된 품질(제35조 1항) 합의하지 않은 경우: 견본·모형과 동등한 품질(제35조 2항 c호)	계약에 일치(각 조건 A.1)	합의된 품질(제153조) 합의하지 않은 경우: ① 보충합의를 하거나 거래 관습에 따라 확정(제61조) ② 품질요구 불명확시 - 국가표준·업종표준에 따라 이행, 국가표준·업종표준이 없으면 통상의 표준 또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표준에 따라 이행(제62조 1항)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등품질에 의거함
	수량 합의된 수량(제35조 1항) 초과수량일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인수 또는 거절 선택 가능(제52조 2항)	계약에 일치(각 조건 A.1)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보충 또는 손해배상(제158조)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 수용 또는 거절 선택 가능(제162조)	수량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

## 2. 서류인도의무 규정의 차이점

CISG에서는 서류인도의무가 있는 경우와 계약상 정해진 시기 이전에 서류를 인도하는 경우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방식에 따라 서류인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서류인도의무에서 CISG와 중국 합동법은 모두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류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서로 반대된다. CISG에서는 만약 서류의 교부가 계약에서 정한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반면에 중국 합동법은 매도인이 약정에 따라 서류와 자료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ISG에서는 서류인도의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민법에서는 서류인도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CISG에도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는 소유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는 한국 민법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서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서류인도의무에 관해서 CISG과 한국 민법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류인도에 관한 차이점의 비교는 <표 2>와 같다.

<표 2> 서류인도에 관한 4가지 규범의 차이점

	CISG	Incoterms 2010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
서류 인도	① 명시적 규정 (제34조)	① 명시적 규정 (A.1/A.8)	① 명시적 규정 (제135 조, 제136조)	① 명시적 규정 없으나 준용 가능(제568조)
	②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물품 의 인도가 없던 것으로 봄	②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서는 구분 없음	② 완전히 이행하지 않 은 경우라도 물품의 멸실·훼손에 대한 위 험이전에 아무런 영 향 없음	② 완전히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 대해서는 구분 없음

## IV. 결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에 따라 상호 의무와 권리가 형성된다.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인도와 서류인도를 통해 매매의 목적인 소유권이전을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인수행위를 위한 자신의 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완성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형성된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시기, 인도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 의무에 대해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CISG, 국내거래와 국제거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Incoterms 2010,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매도인의 물품 및 서류 인도 의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CISG와 중국 합동법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 적합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이 주로 물품인도 및 위험이전 그리고 비용분담에 중점을 두고 규정하고 있는데, Incoterms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상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한 기초적 역할 또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CISG,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과는 법률적 성격이 상이하다.

상기의 규범들은 국제물품매매거래 특히 한·중 무역거래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규범들로서 한·중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네 가지 규범의 차이를 모르고 물품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 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 물품매매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상관습적인 차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원진(2009), 「무역계약론」, 서울: 박영사.
- 김상만(2011),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 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제102호, pp.127-160.
- 박남규(2013),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p.2-26.
- 석광현 (2009),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 2009, pp.235-284.
- 양대천·조현정·박성호(20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경제』, 제48권 제1호, pp.67-97.
- 오세창·박성호(2014), 『무역계약론』, 서울: 박영사.
- 오원석(20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pp.1-16.
- 오원석(2004), 『UN통일매매법』, 부산: 삼영사.
- 오원석·허해관(2010),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pp.133-166.
- 이시환(2004), “중국 통일계약법상 매매계약당사자의 의무”, 『국제통상』, 제9권 제2호, pp.3-27.
- 이시환(2009), 『신무역계약론』, 고양: 신양사.
- 이정표(2002), 『중국통일계약법』. 서울: 한울.
- 胡涵钧(2002), 『国际经贸实务』, 上海: 上海复旦大学出版社.
- 米振友, 胡玉良(2014), 『合同管理工具箱』, 北京: 中国铁道出版社.
- 屈茂辉(2003), 『中国合同法学』, 长沙: 湖南大学出版社.
- 中国法学网. [www.chinacourt.org](http://www.chinacourt.org) (2017년 3월 20일 검색).
- Bianca, C. M., M. J. Bonell(1987),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IUFFRE · MILAN: Fred B Rothman & Co Press.
- Folsom, R. H., M. W. Golden, and J. A. Spanogle, and M. P. Van Alstine(2012),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a Nutshell*(9th ed.), West Press.
- Honnold, John, O.(2009),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4th ed.),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Press.
- ICC(2000),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Paris: ICC Publication.
- ICC(2010), *Incoterms 2010*, Paris: ICC Publication.
- Johnson, Thomas E., Donna L. Bade(2010), *Export Import Procedures and Documentation*(4th ed.), New York: AMACOM.
- Seyoum, Belay(2009), *Export-Import Theory, Practices, and Procedures*(2nd ed.), London: Routledge Press.
- UNCITRAL(2008),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Press.

CLOUT Case No. 219 [Switzerland, Tribunal Cantonal Valais, 28 October 1997].

CLOUT Case No. 338 [Germany, Oberlandesgericht Hamm, 23 June 1998].

CLOUT Case No. 362 [Germany, Oberlandesgericht Naumburg, 27 April 1999].

CLOUT Case No. 977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 June 2003].

China, Intermediate Peoples Court Economic Chamber, 102, 1998. 02. 15.

Swiss, Handelsgericht des Kantons Zürich, HG 970238.1, 1999. 02. 10.

## 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Ak-sim Hyeong  
Sung-ho Park

---

### • Abstract •

This research employ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plore the rules of CISG, Incoterms 2010, Chinese Contract Law, and Korean Civil Act with precedent researches and present custom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seller's delivery obligation to those regulations, such as the time and place of delivery goods, the conformity of goods on the contract, and delivery of documents. Therefore, the parties of contract, especially between Korean and Chinese traders, must be aware of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those selec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duce disputes between them,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eir sales contract.

---

(Key Words) Seller's Delivery Obligation,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